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20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서영교 · 박균택 · 박희승  
임오경 · 이성윤 · 추미애  
장경태 · 오세희 · 정준호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

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교정청장”을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제1항 후단의 기관을 포함한다)”로, “보호관찰지소를”을 “지소를”로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할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사항
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5.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6.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6조제1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지소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 <신설>

기관을 포함한다)-----  
-----지소를-----  
--.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  
-----이 조에서 같다-----  
-----.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할한다.

1. ~ 6.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사항
  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  
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 (생략)

을 받은 자와 보호자 및 교육  
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5.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6.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무

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  
소(보호관찰소지소와 제14조제  
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  
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외한다)-----  
-----  
-----.

② (현행과 같음)